

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(제40조의2제3항 단서 관련)

가 나			화약	폭약	화 공 품									
					공업용 뇌관 · 전기 뇌관		신 관		실탄 · 공포탄	도폭선	폭 탄 · 어뢰 · 로켓탄 등으로 작약이 장전된 것 (소이제를 사용한 것 제외)	꽃불류		그 밖의 화공품 (소이제를 사용한 것 제외)
					특 용에 어는 것	별 기 들 있는 것	신 관 (포 용 을 제외)	관 경 제 용 신 관				크 래 커 블 인 옥	그 밖 의 꽃 불 류	
화 약				○	○			○	○	○	○		○	○
화 공 품	폭 약		○		○			○	○	○				○
	공 업 용 뇌 관 · 전 기 뇌 관	특 별 용 기 에 들어있는것	○	○		○	○	○	○					○
		그 밖 의 것			○		○	○	○					○
	신 관	신 관 (포 경 용 을 제외)			○	○		○	○	○	○			○
		포 경 용 신 관	○		○	○	○		○	○				○
	실 탄 · 공 포 탄	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	○
	도 폭 선	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	○
	폭탄, 어뢰, 로켓트탄, 포탄 등으로 작약을 장전하여 있는것(소이제를 사용한 것 제외)		○	○			○	○	○	○				○
	꽃 불 류	크 래 커 블 · 인 옥											○	
그 밖 의 꽃 불 류		○										○		
그밖의 화공품(소이제를 사용한 것 제외)		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	
비고	① ○표는 "가"란에 기재하는 당해 구분의 화약류와 "나"란에 기재하는 당해구분의 화약류와를 적재할 수 있는 것을 표시한다. ② 3종류 이상의 화약류를 함께 실을 경우에는 그 화약류가 이 표에 의하여 함께 실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 ③ 특별용기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를 말한다. ④ 특별용기에 수납한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 또는 폭약의 중량은 화약 4.5톤 이하 또는 폭약 2.25톤 이하로 한다(화약과 폭약을 함께 실는 경우에는 화약 2톤을 폭약 1톤으로 환산하여 혼재하는 양을 폭약 2.25톤 이하로 한다).													